

부록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 선거기사심의기준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인

1.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공정성)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의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2조(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객관성) ① 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4조(공익성) 언론사는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장 기 사

제6조(사실보도) ① 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언론사는 선거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 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③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기사는 그 조사의 전제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보도할 경우 경쟁자나 경쟁집단 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 ① 언론사가 정당·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할 때는 후보자등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제1항의 비교평가결과 보도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여야 한다.

제9조(인용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개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뷰 기사)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 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 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기고 등) ① 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기사)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 기사를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표제 및 사진

제14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진게재) ① 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광 고

제16조(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권리구제

제18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제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회·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때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 제3항을 위반하는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제8조(의결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심의안건)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 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 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당해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는 때에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주의 또는 경고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결정을 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자(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9조(반론보도청구회부)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첨 부 : 본인승낙서 1부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대표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승낙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직업	
	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경력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	시 정 요 구 서			
시정요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e-mail 주소)		④ 전 화 번 호	
시정요구 대상	⑤ 언론사명 (매체명)		⑥ 대표자 성명	
	⑦ 보 도 일 자 및 지 면		⑧ 소 재 지	
	⑨ 보 도 내 용		⑩ 전 화 번 호	
시정요구 사항 (별지작성 가능)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시정요구 처리 결과 통지서				
시 정	성 명		접 수 일	년 월 일
요 구 인	주 소 (e-mail 주소)			
시정요구사항				
처 리 결 과				
귀하의 시정요구가 상기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언 론 중 재 위 원 회				
문의사항연락처 : (소속부서의 표시) 〇 〇 〇 (전자우편 주소의 표시) 전화 팩스				

(별지 제5호 서식)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	재심청구서			
원심결정	의결번호			
	결정일자			
청구인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주 소			
	전화번호			
	E-mail			
청구의 취지 및 사유	별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재심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				
의결번호				
청구인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접수일	년 월 일
	주소			
청구사항				
처리결과				
귀하의 재심청구가 상기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언론중재위원회				
문의사항연락처 : (소속부서의 표시) 전화		OOO (전자우편 주소의 표시) 팩스		

(별지 제7호 서식)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	반론 보도 청구 회 부 서			처리시간
				48시간
청 구 인	①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② 주 소 (e-mail, 주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⑦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⑧ 주 소	
	⑨ 대표자 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소 재 지		⑫ 전 화 번 호	
반 론 보 도 청 구 대 상	⑬ 언 론 사 명 (매 체 명)			
	⑭ 보도일자 및 지면			
	⑮ 보 도 내 용			
공직선거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4. 보도기사 전문				수수료
				없 음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 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 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

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

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

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의 자유와 기능 “일간신문 등” 등 “등” 등에 의한 정당·정책의 홍보, 당원의 정치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 “등”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제178조(개표의 진행) ②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82조의7(인터넷광고) 제5항·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제1항·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또는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

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 하. 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 거.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⑦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 제2항, 제108조 제3항 제4호, 제137조 제1항 및 제16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부분과 부칙 제11조 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86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4.

심의대상 매체현황

※ 일간지 131종, 주간지 277종, 월간지 36종, 뉴스통신 2종 : 총 446종

1) 일간지 : 131종

구 분	매 체 명	
중앙 일간지 (31)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데일리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스포츠칸, 일간스포츠 - 농민신문 - 데일리노컷뉴스, 더데일리포커스, 메트로, 에이엠세븐, 이브닝, 시티, 스포츠한국	
지역 일간지 (100)	서울(12)	내외일보, 대한매일신문, 대한투데이, 서울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일간투데이, 재경일보
	부산(2)	국제신문, 부산일보
	대구(6)	대구신문, 대구일보, 동국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일간대구경북
	인천(4)	경도신문, 기호일보, 인천신문, 인천일보
	광주전남(16)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광일보, 전남도민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즈, 남도매일, 일간호남, 호남도민일보, 희망일보
	대전충남(9)	금강일보,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충청타임즈
	울산(4)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경기(17)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수도일보, 수도권일보, 수원일보, 시대일보, 오늘신문, 우리일보, 일간경기, 전국매일, 중부일보, 현대일보,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북(4)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전북(11)	새만금일보, 새전북신문, 일간 전북타임스,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매일신문, 전북연합신문,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경북(3)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남(6)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연합일보, 한남일보
	제주(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2) 주간지 : 277종

구 분	매 체 명	
종합 주간지 (34)	뉴시스아이즈, 뉴스위크한국판, 시사뉴스, 시사IN, 시사저널, 시사포커스, 씨앤비저널, 매경ECONOMY, 미래한국, 위클리경향,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믹리뷰,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한겨레21 주간지뉴스인뉴스, 뉴스포스트, 미디어워치, 민주신문, 사건의 내막, 시민사회신문, 시사서울, 시사신문, 위클리 오마이뉴스, 월드경제신문,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중앙선데이, 토요경제, 파이낸셜투데이	
교육 주간지 (13)	교육신보, 교육연합신문, 대전교육신문, 대한교육문화신문, 대한교육신문, 미래교육신문, 삼남교육신문, 전라교육신문, 주간교육신문, 참교육신문, 한국교육신문, 한국교직원신문, 호남교육신문	
지역 주간지 (230)	서울(37)	강남저널,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신문, 격주간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 구로타임즈신문, 노원신문, 뉴스인, 동북일보,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서울강북 신문, 서울강서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구민신문, 성북신문, 양천투데이, 영등포신문, 은서울, 종로저널, 주간 강남내일신문, 주간 강남신문, 주간 노원우리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서대문자치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시청신문, 주간 은평신문, 주간 종로신문, 주간중랑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부산(1)	부산여성뉴스
	대구(3)	대구달성신문, 대구푸른신문, 팔공신문
	인천(3)	남동신문, 부평신문, 연수송도신문
	광주(1)	시민의소리
	울산(2)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경기(41)	가평타임즈, 강북신문, 경기헤럴드, 고양신문, 고양파주자치신문, 과천문화신문, 과천시대신문, 광명일보, 군포신문,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뉴스데이, 뉴스리더, 동부교차로저널,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타운, 세종신문, 시사타임, 시흥신문, 아이디분당, 안산정론신문, 안성신문, 안양광역신문, 양주신문, 여주신문, 연천저널, 오산시민신문, 용인신문, 위클리 와이, 이천신문, 자치안성, 주간 경춘신문, 주간현대, 파주저널,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포천신문, 하나로신문, 하남신문, 화성오산신문
	강원(10)	강릉신문, 강원리뷰, 강원북부신문, 삼척동해신문, 설악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주간철원신문, 태백신문, 홍천신문
	충북(9)	목요신문, 옥천신문, 음성뉴스, 제천신문, 증평괴산저널, 진천시사신문, 충북뉴스, 충주신문, 충청리뷰,
	충남(13)	공주신문, 금산신문, 뉴스서천, 당진시대, 온양신문, 천안신문, 청양신문, 충남시사신문, 홍성신문, 서해안신문, 논산시문, 예산신문, 태안신문
	전북(23)	고창신문, 고창코리아,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완주신문, 익산신문, 임실신문, 정읍신문, 진안신문, 주간 군산신문, 주간 김제신문, 주간 소통신문, 전북신문고, 정읍뉴스, 익산투데이, 임실뉴스, 해피데이고창
	전남(29)	강진고을, 고흥타임즈,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남해안신문, 담양신문, 담양주간신문,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순천시민의신문, 큰여수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여향진도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저널, 주간 강진신문, 주간 나주신문, 주간 순천신문, 주간 영광신문, 주간 완도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주간 해남신문, 주간 해진신문, 주간 화순신문, 진도타임스, 향도신문

구 분	매 체 명	
지역 주간지 (230)	경북(25)	경북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고향신문, 군위신문, 김천신문, 삼백신문, 상주시민신문, 상주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영천시민신문, 예천신문, 울진21, 울진신문, 의성신문, 청도신문, 칠곡신문
	경남(32)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문, 거창신보, 경서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남해시대, 남해신문, 미리벌신문, 밀양시민신문, 한국시사, 밀양신문, 사천신문, 새거제,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주간아림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 창녕신문, 통합창원신문, 하동신문, 한려투데이,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 함양정통신문, 함양신문, 황강신문
	제주(1)	서귀포신문

3) 월간지 : 36종

구 분	매 체 명
종합월간지(8)	경제풍월, 뉴스저널,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펄매거진, 한국논단
여성지(6)	레이디경향,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주부생활
지역월간지(16)	굿뉴스피플, 월간광양저널, 월간경민, 월간 김포뉴스, 월간 대한, 월간 이천, 여수여수사람들, 열린전북, 수원리뷰, 시사전북, 자치광장, 자치평론, 전국지방시대, 전라도닷컴, 전북마당, 한국여성저널
교육월간지(6)	교육평론, 새교육, 초등우리교육, 중등우리교육, 교육사랑, 푸른전북교육

4) 뉴스통신 : 2종

연합뉴스, 뉴시스

5.

색인

1) 결정유형별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경고문게재	2010지선108	나주투데이	70
	경고문게재	2010지선152	호남매일	75
	경고문게재	2010지선153	호남신문	78
	경고문게재	2010지선154	호남신문	81
	경고문게재	2010지선156	강진고을	84
	경고문게재	2010지선169	충청일보	89
	경고문게재	2010지선176	내외일보	92
	경고문게재	2010지선177	우리일보	95
	경 고	2010지선4	뉴스저널	98
	경 고	2010지선5	시사매거진	100
	경 고	2010지선6	데일리스포츠월드	102
	경 고	2010지선7	중앙매일	104
	경 고	2010지선15	전라일보	107
	경 고	2010지선19	대한매일신문	109
	경 고	2010지선32	내외일보	111
	경 고	2010지선35	수도일보	113
	경 고	2010지선43	전주일보	115
	경 고	2010지선53	강원도민일보	118
	경 고	2010지선54	새전북신문	120
	경 고	2010지선55	시민일보	122
	경 고	2010지선56	인천일보	124
	경 고	2010지선57	인천일보	126
	경 고	2010지선62	중앙매일	128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경 고	2010지선63	중앙매일	130
	경 고	2010지선64	중앙매일	132
	경 고	2010지선66	시사매거진	134
	경 고	2010지선67	강원일보	136
	경 고	2010지선68	동국일보	138
	경 고	2010지선69	대전일보	141
	경 고	2010지선70	인천일보	143
	경 고	2010지선71	충청투데이	145
	경 고	2010지선74	충청일보	147
	경 고	2010지선80	파이낸셜뉴스	148
	경 고	2010지선82	대한매일신문	150
	경 고	2010지선84	새만금일보	152
	경 고	2010지선85	전주일보	155
	경 고	2010지선86	일요서울	157
	경 고	2010지선88	경기헤럴드	159
	경 고	2010지선89	거창군민신문	161
	경 고	2010지선90	거창신보	163
	경 고	2010지선91	한국시사	165
	경 고	2010지선92	서울신문	168
	경 고	2010지선93	강원도민일보	169
	경 고	2010지선94	광주일보	171
	경 고	2010지선95	인천신문	173
	경 고	2010지선96	충북일보	175
	경 고	2010지선97	충청투데이	177
	경 고	2010지선98	시사신문	179
	경 고	2010지선99	시사신문	181
	경 고	2010지선100	시사포커스	183
	경 고	2010지선101	성북신문	184
	경 고	2010지선109	중부일보	186
	경 고	2010지선110	중부일보	188
	경 고	2010지선114	수도권일보	190
	경 고	2010지선115	시사포커스	192
	경 고	2010지선116	교육연합신문	194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경 고	2010지선117	김천문화신문	196
	경 고	2010지선118	서경신문	198
	경 고	2010지선119	한국시사	199
	경 고	2010지선120	인천일보	200
	경 고	2010지선121	주간 시정신문	202
	경 고	2010지선122	주간조선	204
	경 고	2010지선124	충청일보	206
	경 고	2010지선125	충남일보	207
	경 고	2010지선126	충청투데이	209
	경 고	2010지선127	아시아일보	211
	경 고	2010지선128	주간 강남내일신문	213
	경 고	2010지선130	경북일보	215
	경 고	2010지선131	중구신문	217
	경 고	2010지선132	중구자치신문	218
	경 고	2010지선136	중도일보	220
	경 고	2010지선137	충청일보	222
	경 고	2010지선141	매일신문	224
	경 고	2010지선142	우리일보	227
	경 고	2010지선143	월간중앙	229
	경 고	2010지선145	여수여수사람들	231
	경 고	2010지선146	아주경제	236
	경 고	2010지선147	연합뉴스	237
	경 고	2010지선151	전남매일	238
	경 고	2010지선155	일요서울	240
	경 고	2010지선157	전광일보	242
	경 고	2010지선158	호남신문	244
	경 고	2010지선159	시사IN	246
	경 고	2010지선160	뉴스포스트	248
	경 고	2010지선161	강남포스트	251
	경 고	2010지선162	대구일보	253
	경 고	2010지선163	조선일보	254
	경 고	2010지선164	한겨레	257
	경 고	2010지선165	아주경제	258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경 고	2010지선166	민주신문	261
	경 고	2010지선168	evening	263
	경 고	2010지선170	서울신문	265
	경 고	2010지선172	세계일보	268
	경 고	2010지선173	중앙일보	270
	경 고	2010지선174	밀양사람들	271
	경 고	2010지선178	종로저널	272
	경 고	2010지선179	사건의내막	275
	경 고	2010지선182	월간중앙	277
	경 고	2010지선183	마포타임즈	280
	주 의	2010지선2	광주일보	282
	주 의	2010지선9	파이낸셜뉴스	284
	주 의	2010지선12	데일리스포츠월드	286
	주 의	2010지선13	아시아일보	288
	주 의	2010지선14	아시아일보	290
	주 의	2010지선16	전북일보	292
	주 의	2010지선17	경인종합일보	295
	주 의	2010지선18	경인종합일보	297
	주 의	2010지선20	수도권일보	299
	주 의	2010지선22	전국매일	301
	주 의	2010지선23	전국매일	303
	주 의	2010지선24	전국매일	305
	주 의	2010지선25	중도일보	307
	주 의	2010지선26	중도일보	309
	주 의	2010지선27	중부일보	311
	주 의	2010지선28	중부일보	313
	주 의	2010지선36	시민일보	315
	주 의	2010지선37	아시아경제	317
	주 의	2010지선38	우리일보	319
	주 의	2010지선39	우리일보	321
	주 의	2010지선40	인천일보	323
	주 의	2010지선41	전주일보	325
	주 의	2010지선42	전주일보	327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주 의	2010지선44	현대일보	329
	주 의	2010지선45	시사뉴스	330
	주 의	2010지선50	주간함양	332
	주 의	2010지선51	경제풍월	334
	주 의	2010지선59	경북일보	336
	주 의	2010지선60	경기신문	337
	주 의	2010지선61	일간 전북타임스	339
	주 의	2010지선65	충북일보	341
	주 의	2010지선72	광남일보	343
	주 의	2010지선73	전남일보	345
	주 의	2010지선75	일요서울	347
	주 의	2010지선76	위클리경향	349
	주 의	2010지선81	대전일보	351
	주 의	2010지선83	새만금일보	353
	주 의	2010지선102	새만금일보	355
	주 의	2010지선103	월요신문	356
	주 의	2010지선129	인천신문	358
	주 의	2010지선135	조선일보	360
	주 의	2010지선138	국민일보	362
	주 의	2010지선139	동아일보	364
	주 의	2010지선144	헤럴드경제	366
	주 의	2010지선184	대한투데이	367
	권 고	2010지선1	아시아투데이	369
	권 고	2010지선3	데일리노컷뉴스	371
	권 고	2010지선8	파이낸셜뉴스	373
	권 고	2010지선10	기호일보	375
	권 고	2010지선11	동국일보	377
	권 고	2010지선21	스포츠동아	379
	권 고	2010지선33	더데일리포커스	381
	권 고	2010지선34	경기신문	383
	권 고	2010지선46	시사저널	385
	권 고	2010지선47	미래교육신문	387
	권 고	2010지선48	서해안신문	389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권 고	2010지선49	주간 시정신문	391
	권 고	2010지선52	영남일보	393
	권 고	2010지선58	세계일보	395
	권 고	2010지선87	강원리뷰	397
	권 고	2010지선111	새만금일보	399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시정요구인 / 언론사명	면 수
시정요구 심의	정정보도문게재	2010지선150	임세빈 / 주간보령	401
	정정보도문게재	2010지선167	임세빈 / 보령시민신문	403
	정정및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07	양대웅 / 구로오늘신문	405
	정정및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48	전요순 / 일간대구경북	408
	경고문게재	2010지선31	조영규 / THE함안신문	411
	경고문게재	2010지선79	현명관 / 제주프레스	418
	경고문게재	2010지선123	오근량 / 뉴시스	421
	경고문게재	2010지선181	김경희 / 진천군민신문	424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29	서춘수 / 한남일보	428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05	우건도 / 대전일보	431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33	이흥수 / 인천일보	434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49	김호복 / 동양일보	436
	권 고	2010지선106	박정수 / 경남매일	439
	기 각	2010지선30	정송학 / 한겨레	441
	기 각	2010지선77	김성호 / 함평천지신문	443
	기 각	2010지선104	김부기 / 매일신문	446
	기 각	2010지선140	김용일 / 흥성신문	448
	각 하	2010지선113	송재영 / 군포시민신문	450

2) 언론사별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evening	경고	2010지선168	263
	강남포스트	경고	2010지선161	251
	강원도민일보	경고	2010지선53	118
		경고	2010지선93	169
	강원리뷰	권고	2010지선87	397
	강원일보	경고	2010지선67	136
	강진고을	경고문게재	2010지선156	84
	거창군민신문	경고	2010지선89	161
	거창신보	경고	2010지선90	163
	경기신문	주의	2010지선60	337
		권고	2010지선34	383
	경기헤럴드	경고	2010지선88	159
	경북일보	경고	2010지선130	215
		주의	2010지선59	336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0지선17	295
		주의	2010지선18	297
	경제풍월	주의	2010지선51	334
	광남일보	주의	2010지선72	343
	광주일보	경고	2010지선94	171
		주의	2010지선2	282
	교육연합신문	경고	2010지선116	194
	국민일보	주의	2010지선138	362
	기호일보	권고	2010지선10	375
	김천문화신문	경고	2010지선117	196
	나주투데이	경고문게재	2010지선108	70
	내외일보	경고문게재	2010지선176	92
		경고	2010지선32	111
	뉴스저널	경고	2010지선4	98
	뉴스포스트	경고	2010지선160	248
	대구일보	경고	2010지선162	253

구분	언론사명	결정 유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대전일보	경고	2010지선69	141
		주의	2010지선81	351
	대한매일신문	경고	2010지선19	109
		경고	2010지선82	150
	대한투데이	주의	2010지선184	367
	데일리포커스	권고	2010지선33	381
	데일리노컷뉴스	권고	2010지선3	371
	데일리스포츠월드	경고	2010지선6	102
		주의	2010지선12	286
	동국일보	경고	2010지선68	138
		권고	2010지선11	377
	동아일보	주의	2010지선139	364
	마포타임즈	경고	2010지선183	280
	매일신문	경고	2010지선141	224
	미래교육신문	권고	2010지선47	387
	민주신문	경고	2010지선166	261
	밀양사람들	경고	2010지선174	271
	사건의내막	경고	2010지선179	275
	새만금일보	경고	2010지선84	152
		주의	2010지선83	353
		주의	2010지선102	355
		권고	2010지선111	399
	새전북신문	경고	2010지선54	120
	서경신문	경고	2010지선118	198
	서울신문	경고	2010지선92	168
		경고	2010지선170	265
	서해안신문	권고	2010지선48	389
	성북신문	경고	2010지선101	184
	세계일보	경고	2010지선172	268
		권고	2010지선58	395
	수도권일보	경고	2010지선114	190
		주의	2010지선20	299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수도일보	경고	2010지선35	113
	스포츠동아	권고	2010지선21	379
	시민일보	경고	2010지선55	122
		주의	2010지선36	315
	시새IN	경고	2010지선159	246
	시사뉴스	주의	2010지선45	330
	시사매거진	경고	2010지선5	100
		경고	2010지선66	134
	시사신문	경고	2010지선98	179
		경고	2010지선99	181
	시사저널	권고	2010지선46	385
	시사포커스	경고	2010지선100	183
		경고	2010지선115	192
	아시아경제	주의	2010지선37	317
	아시아일보	경고	2010지선127	211
		주의	2010지선13	288
		주의	2010지선14	290
	아시아투데이	권고	2010지선1	369
	아주경제	경고	2010지선146	236
		경고	2010지선165	258
	여수여수사람들	경고	2010지선145	231
	연합뉴스	경고	2010지선147	237
	영남일보	권고	2010지선52	393
	우리일보	경고문게재	2010지선177	95
		경고	2010지선142	227
		주의	2010지선38	319
		주의	2010지선39	321
	월간중앙	경고	2010지선143	229
		경고	2010지선182	277
	월요신문	주의	2010지선103	356
	위클리경향	주의	2010지선76	349
	인천신문	경고	2010지선95	173
		주의	2010지선129	358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인천일보	경고	2010지선56	124
		경고	2010지선57	126
		경고	2010지선70	143
		경고	2010지선120	200
		주의	2010지선40	323
	일간 전북타임스	주의	2010지선61	339
	일요서울	경고	2010지선86	157
		경고	2010지선155	240
		주의	2010지선75	347
	전광일보	경고	2010지선157	242
	전국매일	주의	2010지선22	301
		주의	2010지선23	303
		주의	2010지선24	305
	전남매일	경고	2010지선151	238
	전남일보	주의	2010지선73	345
	전라일보	경고	2010지선15	107
	전북일보	주의	2010지선16	292
	전주일보	경고	2010지선43	115
		경고	2010지선85	155
		주의	2010지선41	325
		주의	2010지선42	327
	조선일보	경고	2010지선163	254
		주의	2010지선135	360
	종로저널	경고	2010지선178	272
	주간 강남내일신문	경고	2010지선128	213
	주간 시정신문	경고	2010지선121	202
		권고	2010지선49	391
	주간조선	경고	2010지선122	204
	주간 함양	주의	2010지선50	332
	중구신문	경고	2010지선131	217
	중구자치신문	경고	2010지선132	218
	중도일보	경고	2010지선136	220
		주의	2010지선25	307
		주의	2010지선26	309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중부일보	경고	2010지선109	186
		경고	2010지선110	188
		주의	2010지선27	311
		주의	2010지선28	313
	중앙매일	경고	2010지선7	104
		경고	2010지선62	128
		경고	2010지선63	130
		경고	2010지선64	132
	중앙일보	경고	2010지선173	270
	충남일보	경고	2010지선125	207
	충북일보	경고	2010지선96	175
		주의	2010지선65	341
	충청일보	경고문게재	2010지선169	89
		경고	2010지선74	147
		경고	2010지선124	206
		경고	2010지선137	222
	충청투데이	경고	2010지선71	145
		경고	2010지선97	177
		경고	2010지선126	209
	파이낸셜뉴스	경고	2010지선80	148
		주의	2010지선9	284
		권고	2010지선8	373
	한겨레	경고	2010지선164	257
	한국시사	경고	2010지선91	165
		경고	2010지선119	199
	헤럴드경제	주의	2010지선144	366
	현대일보	주의	2010지선44	329
	호남매일	경고문게재	2010지선152	75
	호남신문	경고문게재	2010지선153	78
		경고문게재	2010지선154	81
		경고	2010지선158	244

구 분	언론사명/시정요구인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수
시정요구 심의	THE합안신문/조영규	경고문게재	2010지선31	411
	경남매일/박정수	권고	2010지선106	439
	구로오늘신문/양대웅	정정및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07	405
	군포시민신문/송재영	각하	2010지선113	450
	뉴스스/오근량	경고문게재	2010지선123	421
	대전일보/우건도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05	431
	동양일보/김호복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49	436
	매일신문/김부기	기각	2010지선104	446
	보령시민신문/임세빈	정정보도문게재	2010지선167	403
	인천일보/이홍수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33	434
	일간대구경북/전묘순	정정및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48	408
	제주프레스/현명관	경고문게재	2010지선79	418
	주간보령/임세빈	정정보도문게재	2010지선150	401
	진천군민신문/김경희	경고문게재	2010지선181	424
	한겨레/정송학	기각	2010지선30	441
	한남일보/서춘수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29	428
	함평천지신문/김성호	기각	2010지선77	443
	홍성신문/김용일	기각	2010지선140	448